

의안 번호	1928	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24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·정의·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3조)
-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안 제4조)
- 입법예고 기간(안 제5조)
- 입법예고문 작성(안 제6조)
- 입법예고 방법(안 제7조)
- 의견제출 및 처리(안 제8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~ 제43조
- 「법제업무 운영 규정」 제2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안은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큰 거 법 규

행정절차법

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① 법령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이하 “입법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22.>

- 1.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- 2.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- 3.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
- 4.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42조(예고방법)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, 주요 내용 또는 전문(全文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, 추가로 인터넷,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
- 1.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: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·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
 - 2.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: 공보를 통한 공고
-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-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

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 1. 11.>

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[시행일: 2022. 7. 12.] 제42조

제43조(예고기간)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(자치법규는 20일) 이상으로 한다.

법제업무 운영 규정

제20조(자치법규안 입법예고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, 인터넷, 방송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2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, 제출의견 접수기관, 의견제출 기간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(신·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)을 게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0. 20.>

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5. 10. 20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0. 20.>

[전문개정 2010. 10. 5.]